

【 12 】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3.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건설교통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항으로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상향 조정하고
-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료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수익성이 낮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현재 타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원활한 도로소통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함.

□ 주요골자

가.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률을 상향 조정 (안제7조)

건설교통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과 관련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 방안에 따른 사항으로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일부변경 (안 제10조)

공영주차장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 위탁대행료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

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함 (별표 2)

현재 타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 조정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자동차(800cc 미만)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경형자동차(800cc 미만)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표안에 제1항 제1호의 경우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③(생략) ④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경자동차</u> (800cc 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③(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u>경형자</u> 동차(800cc 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_____.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산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_____ _____.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선정방법</th> <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 제1호의 경우</td> <td>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td> <td>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r> <td>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td> <td>수의계약</td> <td>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td> <td>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기타의 경우</td> <td>경쟁계약</td> <td>입찰금액(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를 최고가금액으로 한다)</td> <td>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body> </table>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를 최고가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선정방법</th> <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대행료를 최고가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③~⑤(생략)	③~⑤(현행과 같음)																																												
(별표 2) : 불임참조	(별표 2) : 불임참조																																												

[별표 2] 【개정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input type="radio"/> 시설면적 <u>70㎡</u> 당 1대(시설면적/ <u>70㎡</u>)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input type="radio"/> 시설면적 <u>100㎡</u> 당 1대(시설면적/ <u>100㎡</u>) (다만, 장례예식장은 <u>80㎡</u>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input type="radio"/> 시설면적 <u>150㎡</u> 당 1대(시설면적/ <u>150㎡</u>)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input type="radio"/> 시설면적 <u>50㎡</u> 초과 <u>150㎡</u> 이하 : 1대 <input type="radio"/> 시설면적 <u>150㎡</u> 초과 : 1대에 <u>150㎡</u> 를 초과하는 <u>100㎡</u> 당 1대를 더한 대수 [$1 + \lceil (\text{시설면적} - 150\text{m}^2) / 100\text{m}^2 \rceil$]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input type="radio"/> 전용면적 <u>85㎡</u> 이하 : <u>85㎡</u> 당 1대 <input type="radio"/> 전용면적 <u>85㎡</u> 초과 : <u>56㎡</u> 당 1대 (단 세대당 1대이상)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input type="radio"/> 골프장 : 1홀당 <u>15대</u> (홀의수 <u>×5</u>) <input type="radio"/> 골프연습장 : 1타석당 <u>1.5대</u> (타석의수 <u>×5</u>) <input type="radio"/> 옥외수영장 : 정원 <u>10인</u> 당 1대(정원/ <u>10인</u>) <input type="radio"/> 관람장 : 정원 <u>70인</u> 당 1대(정원/ <u>70인</u>)
7. 그 밖의 건축물	<input type="radio"/> 시설면적 <u>200㎡</u> 당 1대(시설면적/ <u>200㎡</u>)

[비 고]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0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미만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현 행]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 23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u>80㎡</u> 당 1대(시설면적/ <u>80㎡</u>)
2. 문화 및 접회사설(관광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u>150㎡</u> 당 1대(시설면적/ <u>150㎡</u>) (다만, 장례예식장은 <u>80㎡</u>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u>150㎡</u> 당 1대(시설면적/ <u>150㎡</u>)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u>50㎡</u> 초과 <u>150㎡</u> 이하 : 1대 ○ 시설면적 <u>150㎡</u> 초과 : 1대에 <u>150㎡</u> 를 초과하는 <u>100㎡</u> 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u>150㎡</u>)/ <u>100㎡</u>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광장	○ 골프장 : 1홀당 <u>10대</u> (홀의수 × 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u>1대</u> (타석의수 × 1) ○ 옥외수영장 : 정원 <u>15인</u> 당 1대(정원/ <u>15인</u>) ○ 관광장 : 정원 <u>100인</u> 당 1대(정원/ <u>100인</u>)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u>250㎡</u> 당 1대(시설면적/ <u>250㎡</u>)

[비 고]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0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문화 및 접회사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0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을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미만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시설면적/100m ²)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시설면적/150m ²)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시설면적/200m ²)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m ² 초과 : 1대에 150m ²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m ²)/100m ²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시설면적/300m ²)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기타 지역
850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